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

제 · 개정 일자 : 2026. 5. 26.

제 · 개정 번호 : 03

2023. 11. 1. 제 정

2024. 5. 17. 1차개정

2025. 7. 24. 2차개정

2026. 5. 26. 3차개정

남양유업 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

(약칭 : 공정거래 CP규정)

[시행 2026.5.26.] [공정거래 CP규정 2026.5.26. 일부개정]

제1장 일반원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양유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회사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사업 활동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시스템과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기준 및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이하 “CP”라 한다).
2. “법령 등”은 법률 및 이에 기초한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하여, 조례(예규), 계약, 각종 규정, 업무매뉴얼 등 명확히 문서화 된 규칙(이하 “법령”이라 함)이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율준수전담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CP운영실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자율준수실시책임자”(이하 “실시책임자”라고 함)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해당 부서의 자율준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CP운영지침”은 CP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이다.
7.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다.
8. “위험관리 부서”는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로서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서를 뜻한다.
9. “리스크평가”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식별(리스크와 리스크 요인을 파악) · 분석 · 평가하는 것

이다.

10. “사전업무협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다.
11. “모니터링”은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없는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조사하는 것이다.
12. “제재조치”는 임직원의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식을 고취시키는 행위다.
13. “인센티브(포상)”는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국민과 협력업체의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14. “CP 효과성평가”는 CP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1절 추진 체제

제4조(추진 체제) ① 최고경영자는 CP 추진 및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준법상생팀이 소속된 최상위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③ 자율준수전담부서는 준법상생팀이 담당한다.

④ 법령 위반에 따른 내부제보시스템 창구 및 조사 업무는 감사팀이 담당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

제5조(최고경영자의 권한) ① 최고경영자는 CP운영 관련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진다.

② 최고경영자는 CP규정을 제·개정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④ 최고경영자는 CP의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최고경영자의 의무) ① 최고경영자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적절한 권한 및 지위를 부여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전

담부서에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받을 경우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최고경영자는 CP 운영계획 및 CP 효과성평가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토한다.

제3절 자율준수관리자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가 임명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지식이 풍부하거나 CP를 포함한 준법경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임직원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다시 임명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본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④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⑤ 회사는 본 규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9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위 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
3. 위 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권한
4. CP 업무수행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 부서 임직원에게 활용가능한 형태로 제출요구 권한
5. CP운영지침의 제·개정
6. 기타 CP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

제10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P의 계획수립 및 운영
2. CP의 운영실태 점검 및 시정요구 등 후속조치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
4. CP 활동 및 사안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5. CP규정의 개정검토 및 최고경영자에게의 보고
6. CP운영지침의 제·개정검토 및 관리
7. CP활동 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8. 기타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4절 자율준수전담부서

제11조(자율준수전담부서의 구성)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자율준수전담부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① 자율준수전담부서의 직원은 입사 2년 이상자로서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로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준수전담부서 직원으로 보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 ③ 자율준수전담부서의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에 의한다.
- ④ 자율준수전담부서의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자율준수전담부서의 업무) ① 자율준수전담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2.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 작성
3. CP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및 CP 운영 효과성 평가

4.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
 5. CP 교육의 계획, 관리, 실시, 재검토
 6. 사전업무협의 검토
 7. 내부제보 접수, 조사
 8. CP 모니터링의 계획, 실시, 평가, 개선
 9. 기타 CP의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시한 업무
- ② 자율준수전담부서는 제1항의 실시 결과에 대해 수시로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한다.

제5절 실시책임자

제13조(실시책임자) ① 실시책임자는 본사 각 부서장, 각 공장장, 각 지점장으로 한다.

- ② 실시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소속부서의 CP 이행준수 점검
 2. 소속부서의 사전업무협의 의무의 이행
 3. 소속부서 직원에 최고경영자 CP 실천의지 교육
 4. 소속부서 직원에 CP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주지 철저
 5. CP의 해당 년도 계획에 대한 의사소통(주지 철저)
 6. 소속부서에서의 자율준수편람 배포
 7. 소속부서의 CP 목표 계획 수립, 관리

제6절 임직원

제14조(임직원의 일반의무) CP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각종 내부규정·자율준수편람 숙지하고 준수
2. 고객 및 외부 거래처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노력
3.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CP 관련 교육목표 달성

제15조(사전업무협의 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이름으로 체결되는 각종 계약(단발성 구매계약, 렌탈유지보수 등 서비스계약서 제외)
2. 분쟁 등에 따른 공문, 조정, 소송 등의 대응
3. 공문 또는 업무협조전 등 기안서 형태로 자율준수관리자가 사전업무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 업무
4.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검찰청 등 이와 유사한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등의

대응

5.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 ② 임직원은 사전업무협의시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원하는 경우 사전업무 협의 전 협의대상 업무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내부제보 의무) ① 임직원은 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제보하지 않거나 같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위반 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7조(임직원의 금지사항)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스로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다른 임직원 등에 대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
3. 다른 임직원 등의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돕는 것
4. 다른 임직원 등의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것

제3장 CP의 운영 등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제18조(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천명)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최고경영자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 ② 위 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표 및 의지천명 대상에 임직원,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

제19조(자율준수편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위 1항에 따른 배포시 위험관리 부서에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및 변경 소요를 연 1회 이상 검토하여,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한다.

제20조(교육·연수)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들의 법령 준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정거래 관

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 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CP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들로 한다.

③ 교육 세부 운영규정은 CP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3절 내부감시체계

제21조(CP 운영계획)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매 년도 말에 차년도 CP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에 보고한다.

② 자율준수전담부서는 승인된 CP 운영계획의 필요사항을 실시책임자에게 통지한다.

③ 실시책임자는 수령한 CP 운영계획을 소속부서의 구성원에게 주지 한다.

④ 자율준수전담부서는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결과를 점검하여 차년도 CP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22조(리스크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의 기반이 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파악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파악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회사의 공정거래 리스크를 식별·분석·평가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및 회사의 사업 활동 변경 시에는 별도로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한다.

④ 공정거래 리스크를 평가하는 세부 운영규정은 CP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23조(사전업무협의) ① 모든 임직원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 검토·협의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업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인터뷰 또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전업무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내부제보) ①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에 대한 내부제보 창구 업무는 감사팀에서 담당한다.

② 감사팀은 내부제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한다.

- ③ 회사는 위반행위를 제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④ 회사는 내부 제보한 것을 이유로 근무 및 직장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⑤ 회사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익명성, 비밀성을 보장한다.
- ⑥ 감사팀은 내부제보에 관한 조사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한다.
- ⑦ 자율준수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의 조사결과와 대응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에 직접 보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최고경영자에 직접 보고한다.
- ⑧ 내부제보 시스템 세부 운영규정은 제보처리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25조(모니터링) ① 자율준수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과 특정 쟁점에 대하여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 모니터링이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 및 공정거래 법령의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최고경영자에 보고한다.

1. 직원의 자율준수 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3. 직원의 자문요청과 내부제보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조사, 확인

③ 자율준수전담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반영결과 등을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제22조의 리스크 평가 결과, 공정거래 위반 리스크가 중(中) 이상인 부서에 자율준수편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⑤ 모니터링 세부 운영규정은 CP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4절 제재 및 인센티브

제26조(제재처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인사규정 처분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상정을 인사부서에 요청한다.

1.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업무협의 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로 인해 회사에 손해의 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 1호 내지 2호 행위로 인해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전담부서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위 1항에 따른 행위 이외의 공정거래 법령 위반행위 또는 CP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로서 위반수준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사유서를 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은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 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그 임직원의 상급자는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다만 상급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및 CP 참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소명하여 이를 인정받은 경우 이를 면책할 수 있다.
- ④ 위 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⑤ 제재처분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세부 운영규정은 별첨에서 정한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별첨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공개하는 것이 재발방지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시정요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가 행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지도·조언을 함과 동시에 시정요구 및 재발방지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 ② 시정요구를 받은 실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대책, 조치를 강구하고, 이의 실시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자에 제출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발방지책에 대해 최고경영자에 보고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발방지책에 대하여 모든 직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한다.

제28조(인센티브 제공·포상)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활용을 통한 기업의 법위반 예방 및 법률비용 감소에 기여한 임직원 및 CP 교육 실적 우수 임직원 등 회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격려금 등 포상
 - 2. 자율준수관리자 상장 수여
 - 3. 이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위반 행위 시 제재 경감 또는 면제
- ③ 인센티브 제공·포상 세부 규정은 별첨에서 정한다.

제4장 의사소통

제29조(의사소통)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방침과 CP 운영계획, 자율준수편

람 등이 모든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해되고, 직원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채용한다.

② 자율준수전담부서는 내부 의사소통의 내용, 시기, 방법, 대상 등을 정하고, 의사소통의 실시 상황에 대해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한다.

제5장 CP 효과성 평가

제30조(CP운영의 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CP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CP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CP 효과성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CP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CP 운영 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법 위반 행위의 발생 빈도 및 기업에 미친 영향
4. 자율준수전담부서 소관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성과 및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 집단에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CP의 평가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CP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세부 운영규정은 CP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31조(효과성 평가의 활용 등)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제29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연1회 이상 최고경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위 1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인사 제재조치, 예산과 조직운영의 변경, CP규정 개정 추진을 결정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32조(문서 처리의 원칙) ① CP 업무 처리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서에 의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 필요에 따라 즉시 문서를 작성하여 사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CP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보관·보존한다.

③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한다.

④ CP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는다.

제33조(관리대상 문서) ① 주요 관리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2.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관련 문서
3. CP 자율준수편람
4. CP 교육 관련 문서
5. CP 운영 관련 문서
6. CP 내부감시체계 관련 문서

②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사내 문서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관리대상 문서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4조(기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CP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개정 및 회사의 업무환경 변화를 연 1회 검토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CP규정 및 CP운영지침에 반영하여 개정한다.

부칙 <2023. 11. 01>

1.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24년 5월 17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2025년 7월 24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2026년 5월 26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